

 신안산대학교	교직원 포상 규정	규정 번호	2-2-13
		제정 일자	2017.04.19.
		개정 일자	2021.8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포상대상) 포상대상은 학교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교직원, 학과, 부서로 한다.

제3조(포상의 종류 및 기준) 포상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특별공로상 : 공적심사를 통해 대학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근속상 : 대학에 장기 근속하는 동안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대학에 2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및 그 후 매 10년을 가산한 기간까지 성실하게 계속 근무한 자
- ③ 정년상 :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는 자
- ④ 기타 공로상 : 대학 업무 수행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 자 또는 학과(부서)

제4조(포상방법) 포상은 상장과 부상 등으로 한다.

- ① 근속상, 정년상은 별표#1에 따라 시상한다.
- ② 특별공로상, 기타 공로상에 대한 포상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한다.
- ③ 부상의 범위는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의 시기 및 기준) ① 근속상은 매년 개교기념일 전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정년상은 정년퇴임시기 전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특별공로상, 기타 공로상은 따로 정하지 않고, 과업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공적심사) ① 포상 대상자 및 포상학과(부서)에 대한 공적심사는 제3조 포상의 종류에 따라 관할하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.

- ② 포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제7조(포상권자) 포상은 총장이 행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#1]

장기근속자 상금

근속년수	금액	비고
20년 이상	500,000원	
30년 이상	1,000,000원	

정년상 기념품

근속년수	금액	비고
20년 이상	5돈	순금
30년 이상	10돈	행운의 열쇠